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금융·재정·조세

01. 재정경제부

자세한 내용은 [p.008](#)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장기고용 유인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을 위해 통합고용 세액공제의 구조를 개편하고 사후관리를 합리화 합니다.

기존				
구분	1인당 공제액(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우대*	1,450	1,550	800	400
기본	850	950	450	-

→

변경					
구분	1인당 공제액(단위: 만원)				
	중소 (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우대*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기본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02. 재정경제부

자세한 내용은 [p.009](#)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등 웹툰 및 디지털 만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10%(중소는 15%)가 공제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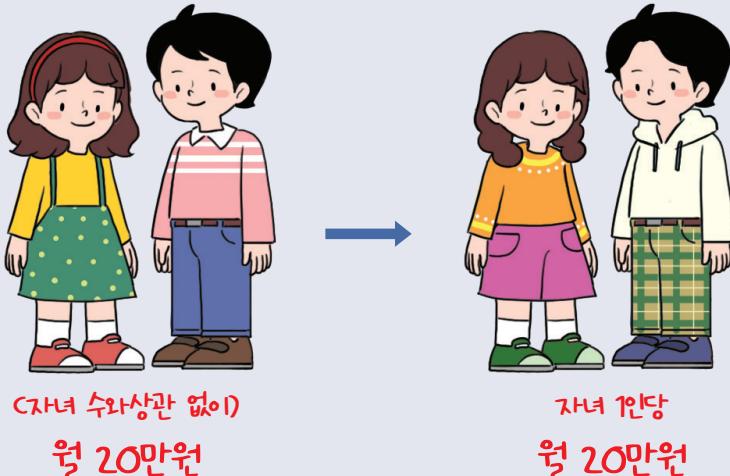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현재 시행 중인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됩니다.



05. 재정경제부

자세한 내용은 [p.012](#)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합니다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자녀 1인+50만원, 자녀 2인 이상+1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자녀 1인+25만원, 자녀 2인 이상+50만원

06. 재정경제부

자세한 내용은 [p.013](#)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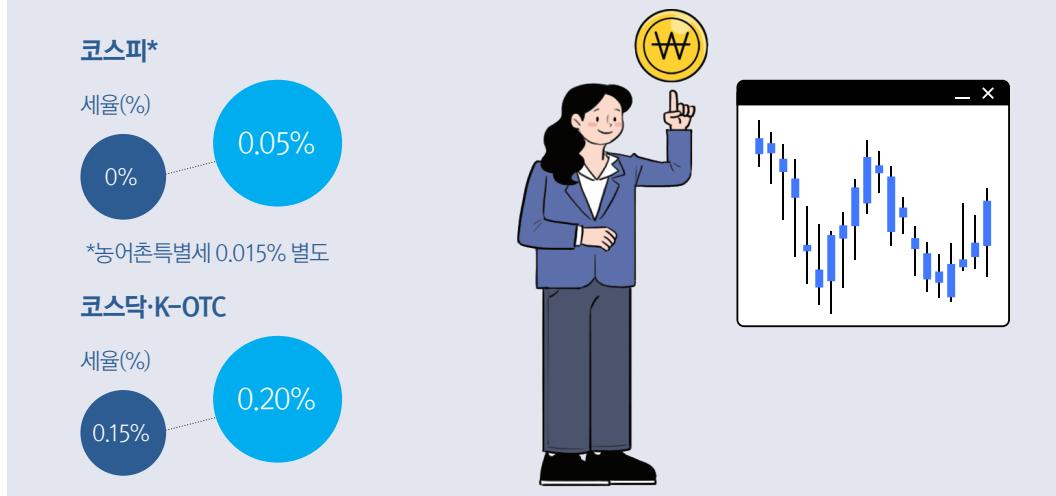
① 적용요건 (① and ②)	① 기준연도('24년 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② i)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ii)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
② 대상소득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③ 적용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

증권거래세율 조정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코스피·코스닥·K-OTC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조정합니다.

- (코스피) 0%(농특세 0.15%) → 0.05%(농특세 0.15%)
- (코스닥·K-OTC) 0.15%(농특세 없음) → 0.20%(농특세 없음)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준조합원에 대한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 단,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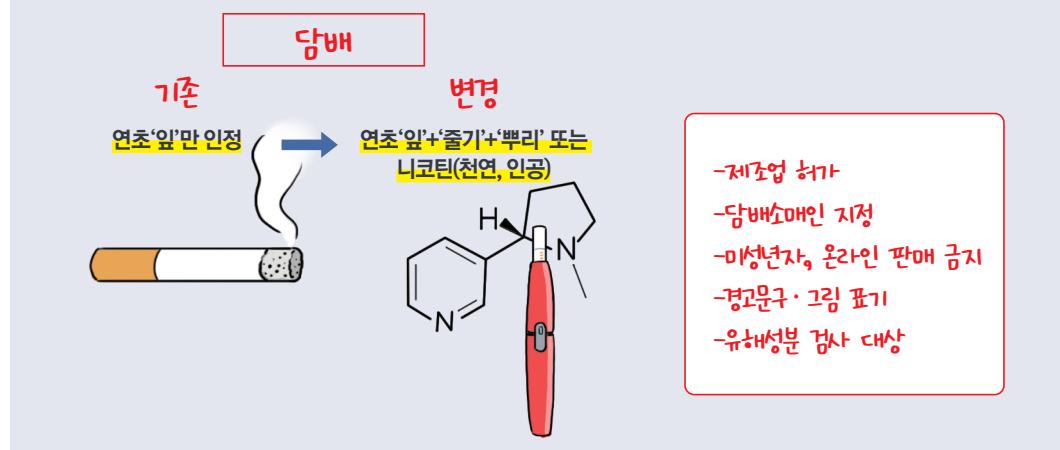
09. 재정경제부

자세한 내용은 p.016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법적 '담배' 정의 확대

시행일: 2026년 4월 중 예정

-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니코틴 기반 제품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담배사업법」·「담배유해성관리법」·「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제 및 과세 대상도 함께 확대됩니다.
- 제조업 허가, 담배소매인 지정 등을 받아야만 담배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담배 갑에 부착하는 경고문구·그림 외 추가적인 식별조치가 추진됩니다.



10. 관세청

자세한 내용은 p.047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기한 수입신고 전까지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과세 방식 신청기한이 수입신고 전까지로 확대됩니다.
- 승인받은 경우, 기업은 가장 유리한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설

시행일: 2026년 6월

- 2026년부터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 청년미래적금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 가입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청년의 장기가입 부담을 줄였으며, 정부기여금 지원비율(일반형-6%, 우대형 12%)도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을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구조를 개편하고 사후관리를 합리화합니다.

		종전				개정									
구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공제액	우대*	1,450	1,550	800	400			700	1,000	500	300				
	기본	850	950	450	-			1,600	1,900	900	500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근로자 등								1,700	2,000	900	-				
사후 관리	1년차	400	700	300				400	700	300					
	2년차	900	1,200	500				900	1,200	500	-				
	3년차	1,000	1,300	500				1,000	1,300	500					

* (좌동)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통합고용세액공제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

추진배경

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

주요내용

2단계 구조로 공제액 재설계 및 사후관리 방식 전환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 ▶ (대상콘텐츠)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 (대상자)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 ▶ (공제비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 (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 ▶ (공제율) 10%(중소: 15%)
- ▶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7.)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추진배경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주요내용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 (대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
- ▶ (한도)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배경

자녀 양육부담 완화

주요내용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월 20만원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현재 시행 중인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됩니다.

- ▶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주요대상

구분	주요대상	한도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비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수강료 	한도 없음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재활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비 	
취학전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 학원 및 체육시설업자에게 지급한 교육비 	300만원
초중고생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교재비(초중고생) · 급식비·교과서대금(초중고생) · 교복구입비(중고생, 한도 50만원) · 예체능 학원비(만 9세 미만) 	초중고생 : 300만원 대학생 : 900만원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추진배경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주요내용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기존에 자녀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씩
상향(최대100만원)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2028. 12. 31.)합니다.

-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구분	현행 (자녀수 무관)	개정안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기본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300만원	35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250만원	275만원
추가 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좌동)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00만원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추진배경

자녀 양육부담 완화

주요내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 ☎ 044-215-4233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를 허용합니다.**

* 공모·사모펀드, 리츠, SPC 등 제외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

① 적용요건 (① and ②)	① 기준연도('24년 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② i)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ii)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
② 대상소득	현금배당액(중간·분기·결산배당)
③ 적용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원 초과) 30%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추진배경 주식시장 활성화 및 경제 선순환 제고

주요내용 고배당기업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도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율 조정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 044-215-4233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하였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2023년 수준으로 조정합니다.

- ▶ (코스피) 0%(농특세 0.15%) → 0.05%(농특세 0.15%)
- ▶ (코스닥·K-OTC) 0.15%(농특세 없음) → 0.20%(농특세 없음)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증권거래세율 조정

추진배경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코스피·코스닥·K-OTC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05%p 인상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 ☎ 044-215-4232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총급여 7천만원이하 준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한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합니다.

다만,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 등은 저율 분리과세를(2026년 5%, 2027년~ 9%) 적용합니다.

구분		현행	개정
농협·수협 산림조합	조합원	비과세	비과세
	준조합원	비과세	비과세
	총급여 7천만원 초과**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신협* 새마을금고*	조합원 회원	비과세	비과세
	총급여 7천만원 초과**	비과세	저율 분리과세

* 준조합원 및 준회원이 없음 / **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추진배경 농·어·임업인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주요내용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법적 '담배' 정의 확대

재정경제부 출자관리과

☎ 044-215-5171

그간 연초의 '잎'으로 한정되어 있던 담배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인공 포함)까지 대폭 확장됩니다.

- ▶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제조업 허가 및 수입판매업 등록,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 개정안 공포일 당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 판매자는 담배소매인 지정 시 필요한 거리제한 요건을 법 시행일 이후 2년간 유예
- ▶ 또한, 「담배사업법」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판매 및 온라인 판매 금지, 담뱃갑 포장지에 경고문구·그림 및 담배 성분 표기,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 품목별 판매개시 전 가격신고,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의 대상이 됩니다.

담배 갑에 부착하는 경고그림 등 외에 추가적인 식별조치로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 및 가격질서 혼란 등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이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담배“입니다.”

니코틴이 포함된 제품까지 법적 '담배' 정의 확대

추진배경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를 확대하여 그간 규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 관리 근거를 마련

주요내용

- 담배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되면서 담배사업법, 담배유해성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 및 과세
- 제조업 허가, 담배소매인 지정 등을 받아야만 담배 제조·판매가 가능
- 법 시행 전·후 제조된 물량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격질서 혼란 방지 등 위해 담배 갑에 부착하는 경고문구·그림 외 추가적인 식별조치 추진

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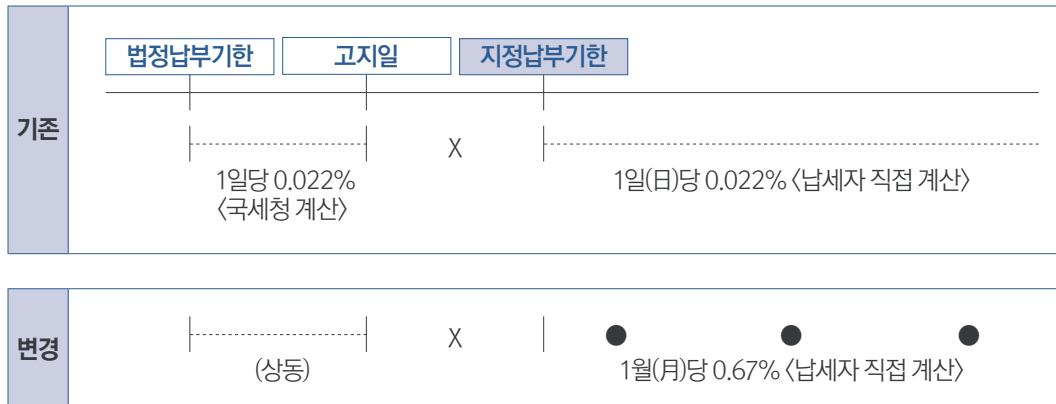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2026년 4월 중 예정)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 ☎ 044-215-4151

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이 일(日) 단위 산출에서 월(月) 단위 산출로 변경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기준-변경 비교



이번 개편으로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식이 간소화되어 납세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추진배경

납세편의 제고

주요내용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 044-215-4152

폐업이후 재기하기 위해 노력하는 영세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체납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합니다.

- ▶ (영세개인사업자 기준)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 ▶ (선의 조건) 5년 이내 조세범으로서 처벌받거나 진행 중인 재판이 없고, 신청일 현재 진행 중인 조세범죄조사가 없을 것
- ▶ (중복적용 금지) 기존에 체납액 납부의무 면제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중복 적용 불가

〈적용기간 연장〉

- ▶ (폐업·재기 기간 연장)
 - (폐업) 2024. 12. 31. → 2025. 12. 31. 이전 폐업
 - (재기) 2027. 12. 31. → 2028. 12. 31. 까지 재기
- ▶ (신청기간 연장) 2028. 12. 31. 까지 → 2029. 12. 31. 까지

〈적용대상 확대〉

- ▶ (체납액 기준 상향) 체납액 5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 ▶ (재기* 인정 확대) 특수형태 근로에 종사하며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용대상 확대
 - * (종전) 사업을 개시하여 1개월 이상 사업 계속 or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특례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확대

추진배경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확대

주요내용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간 확대 및 신청요건 완화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2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금액을 상향합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상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금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금액과 일치하도록 기존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매출액이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 사이의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은 최대 100%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추진배경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주요내용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금액을 8천만원에서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이
추가공제율과 일치되도록 조정*합니다.

* (종전) 기본공제율(%): (대) 5 (중견) 10 (중소) 15, 추가공제율(%): (대·중견) 10 (중소) 15

(개정) 기본공제율(%): (대·중견) 10 (중소) 15, 추가공제율(%): (대·중견) 10 (중소) 15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추진배경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주요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기본공제율 상향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 044-215-4133

**유턴기업 지원 확대를 위하여,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됩니다.**

*(현)감면율 : (소득·법인세) 7년 100%+3년 50% / (관세)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5년간 100%(완전복귀),
50%(부분복귀)

**개정내용은 소득·법인세의 경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관세의 경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

추진배경

유턴기업 지원 확대

주요내용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

시행일

(소득·법인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감면 요건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한도를 도입합니다.

*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9

- ▶ (감면요건) 위기지역의 투자·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5억원 이상 투자 및 10명 이상 고용 요건 신설
- ▶ (감면한도)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만 적용하던 감면한도*를 중소기업에도 적용
*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추진배경

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감면요건 신설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도입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위기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 044-215-4133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대상, 감면기간을 확대하고 감면한도 및 사후관리를 신설합니다.

- ▶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종전〉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개정〉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 ▶ (감면한도) 지방투자누계액 × 70% + ^{지방근무}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 (사후관리)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

* 1명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추진배경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적용대상·감면기간 확대, 감면한도 및 사후관리 신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

☎ 044-215-4133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확대합니다.

- ▶ (종전) 3년 100% + 2년 50%
- ▶ (개정) 3년 100% + 2년 50% + 5년 30%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2025. 11.)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추진배경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율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 공무원·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합니다.

- ▶ 비과세 소득 대상에 「사학연금법」상 특례 적용 교직원*이 학교의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
- * 사립학교가 아님에도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기관에 종사하는 교직원 (예: 카이스트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육아휴직급여·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추진배경

자녀 양육 부담 완화

주요내용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확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현재 시행 중인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한 15% 세액공제가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을 폐지합니다.

* 현재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초과 시 교육비 공제 불가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추진배경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주요내용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시기(2027년)에 맞추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를 1년 유예합니다.

* (현) 분기별 제출

▶ (시행시기) 2026년 1월 1일 이후(변경 전) → 2027년 1월 1일 이후(변경 후)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추진배경

납세협력 부담 완화

주요내용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연 600→3,000만원)합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배경

임업 종사자 지원

주요내용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000만원으로 상향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사적연금(본인 납입액 등)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4→3%)합니다.

* 연금소득(1,500만원 이하) 세율 : (55~69세) 5% (70~79세) 4% (80세~) 3% (종신) 4→3%

또한, 퇴직소득(회사부담분) 연금계좌 납입 후 장기 연금 수령 시 연금외수령 대비 감면율을 확대*합니다.

* 일시수령 대비 감면율: (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 (20년 초과) 50% 감면〈구간 신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추진배경

노후생활 안정 지원

주요내용

연금 형태로 수령시 저율 분리과세 세율 인하

- 본인 납입액 등을 연금으로 종신수령시 세율 4→3% 인하
- 퇴직소득을 2020년 초과 연금수령시 감면 확대(감면율: 40→50%)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적용기한이 3년 연장(~2028. 12. 31.)됩니다.

*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 ▶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 (취업기관)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 (감면율) 10년간 소득세 50%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추진배경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주요내용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 044-215-4211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40%로 상향합니다.

* (현행) (~10만원) 100/110, (~2천만원) 15% [특별재난지역 30%]
(개정안) (~10만원) 100/110, (~20만원) 40% <신설> (~2천만원) 15% [상동]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추진배경

기부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지원

주요내용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15→40%)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부부합산 연 1,000만원)

*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에 위치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추진배경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주요내용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2028. 12. 31.)합니다.

*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세액공제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2025. 7. 31.)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추진배경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주요내용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 적용기한 3년 연장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3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가 확대됩니다.

- ▶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

추진배경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소득금액의 30%로 확대함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 | ☎ 044-215-4222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등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됩니다.

- ▶ 중소기업이 자산취득에 소요된 투자금액을 조기에 비용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추진배경

중소기업 스마트혁신 지원

주요내용

- (대상자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세컨드홈 과세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해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합니다.

*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광역시 구지역을 제외한 9개 시·군·구 지역 : 강원 강릉시·동해시·인제군·속초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전북 익산시

- ▶ 2025년 11월 28일 이후부터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양도세)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 추가로,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가액 요건을 공시가격 4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누리집>업무안내>자치혁신실>지방소멸대응>인구감소지역 지정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추진배경

비수도권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주택 수요둔화로 주택 초과공급이 심화되며 지방 미분양 증가

주요내용

· (세컨드홈 지원 확대)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 완화**

* (당초) 인구감소지역 → (변경) 인구감소지역 +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 양도세, 종부세: 공시가격 4→9억원 이하

시행일

(인구감소관심지역 과세특례): 2025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 ☎ 044-215-4323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한도를 신설합니다.

- ▶ (공제한도) 과세표준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매입가액
- ▶ (이월공제)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 허용

개정내용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2025. 7.)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추진배경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 합리화

주요내용 중고자동차 공제한도 신설

시행일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1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2025. 9.)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추진배경

영세 자영업자의 원재료비에 대한 부담 완화

주요내용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 ☎ 044-215-4321

부가가치세법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의무 제출하여야하는 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합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법개정안 발표(2025. 7.)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추진배경

세원관리 강화

주요내용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업종에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추가

시행일

2026년 4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 044-215-4321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3%→4%로 상향합니다.

* 가공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 사업자가 아닌 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2025. 1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추진배경

조세탈루 방지

주요내용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가공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 | ☎ 044-215-4321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사업장 소재지에서의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게 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2025. 11.)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 입증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추진배경 세원관리 강화

주요내용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게 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651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 연금가입자의 연금계좌에서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외국 자산에 투자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 연금가입자가 소득 수령시 납부할 국내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외국세액이 공제됩니다.
- ▶ 동 개정내용은 일반계좌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금년부터 적용된 점을 고려해서,
 -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참고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간접투자회사등 지급 소득에 대한 연금계좌 외국납부세액공제

추진배경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적용

주요내용

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행일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분부터 적용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 ☎ 044-215-4656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은 현황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시 30일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 시정명령을 위반한 외국법인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계획입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미제출·거짓제출 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참고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

추진배경

자료제출 실효성 확보

주요내용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신설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미제출·거짓제출 분부터 적용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과세 면제 신설

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

☎ 044-215-4656

국제결제은행(BIS)의 이자·배당·유가증권 양도소득 등 국내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면제합니다.

- ▶ 국제결제은행(BIS)은 글로벌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 중앙은행·국제기구 등이 예치한 자금을 주요국 자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통해 원화자산에 대한 안정적 외국인자금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참고자료>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등 과세 면제

추진배경

국제결제은행(BIS) 원화표시자산 투자 확대

주요내용

- BIS는 국내 비과세 대상인 국채·통안채에 대해서만 투자 종
- BIS의 원화표시자산 투자확대를 위해 예금·환매채(RP), 파생상품 등 투자소득에 대해 과세면제 적용

시행일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25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국가데이터처 물가동향과 ☎ 042-481-2531

국가데이터처는 최근의 소비패턴 및 소비지출 구조를 반영하여 통계의 현실 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년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개편하고, 이를 2026년 12월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 ▶ 이번 개편에서는 대표품목 및 가중치 갱신 등을 통해 소비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 확대 등을 통해 지수 작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 또한, 소비자물가 기본분류인 지출목적별분류 개정*으로 신지수 및 과거계열 품목분류를 개편하여 관련 통계의 국내 및 국제 비교성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2019) 및 가계동향조사 항목 분류 개편(2025)

국가데이터처 누리집>통계조사>국가데이터처통계>분야별보기>물가·가계>소비자물가조사

202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추진배경

최근 소비자의 기호, 구매패턴 등 소비구조 변화를 5년 주기로 반영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의 현실 반영도 제고

주요내용

- (지수 기준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변경
- (조사도시 및 권역) 인구·상권 변화를 고려한 대표성 점검 및 보완
- (대표품목 및 가중치) 2025년 기준의 소비지출구조 변화 반영
- (품목분류) 개정된 지출목적별분류(COICOP-K, 2019) 반영
- (통계작성방법 개선) 온라인 거래가격 조사 확대 등

공표일

2026년 12월 31일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국세청 장려세제과

☎ 044-204-3812

국세징수법 압류금지 소액재산 기준은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2023년에 상향되었음에도
근로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은 기존과 동일한 185만원이었습니다.

- ▶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기준도 25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

추진배경

국세징수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한도가 달라 납세자와 채권자
등의 압류관련 업무 혼선 발생

주요내용

압류금지 금액 상향) 국세징수법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압류 금지금액(250만원) 수준으로 근로·자녀장려금 환급액의 압류 금지금액 상향

시행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일 이후(2026년 상반기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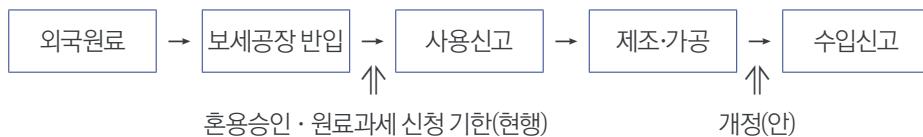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기한 수입신고 전까지 확대

관세청 보세산업과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 042-481-7821
☎ 044-215-4412

그간 혼용비율 과세와 원료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해당 원료를 사용하기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수입신고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 ▶ 보세공장에서 혼용승인·원료과세 신청 누락에 따른 과도한 추징사례 방지를 위한 과세방식 선택 기한 확대(관세법 제188조, 제189조 개정)



재정경제부 누리집>보도자료>“2025년도 세제개편안”

보세공장 제품의 과세방식 선택 기한 확대

추진배경

보세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혼용승인·원료과세 사전신청 누락으로 과도한 추징을 받는 사례 방지를 위해, 과세방식 신청기한을 수입신고 전까지 확대

주요내용

보세공장 생산 제품에 대한 과세방식을 수입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을 확대하고, 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유리한 과세 방식 적용

현행	개정안
혼용작업 신청기한 · 내·외국물품 혼용작업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 · 원재료를 사용신고하기 전까지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 · 제품을 수입신고하기 전까지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 · 제품을 수입신고하기 전까지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

☎ 042-481-7630

그간 발급 이후 아무런 정보 변경 없이 계속하여 사용이 가능했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2026년부터 유효기간이 도입됩니다.

-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부호의 사용기간 갱신이 가능합니다. 기존 부호발급자 분들은 2027년 발급자의 생일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적용됩니다.
- ▶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를 변경하거나 부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유효기간이 다시 산정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해외직구 물품 구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까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 ▶ 또한,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 갱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해지되므로, 다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새로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관세청 누리집>보도자료>“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도입

추진배경

수입자 정보 현행화 및 개인정보 보호 목적

주요내용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 도입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 또는 정보변경 하는 자부터
-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는 2027년 생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만료일 적용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마련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 042-481-1164

관세청은 2026년부터 관세행정 업무 분야별로 존재하는 여러 개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법규준수도 제도'를 운영합니다.

* 전분야 : 통합법규준수도 / 물류업체 : 법규수행능력평가 / 특송업체 :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 ▶ 새로운 법규준수도 제도는 2025년 4분기 평가분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운영되던 다른 평가제도는 순차적*으로 폐지됩니다.

*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 즉시폐지 / 법규수행능력평가 : 2027년부터 폐지

새로운 법규준수도 제도는 다수의 평가제도로 인해 발생했던 업체의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 또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법규준수 역량을 진단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등을 공개할 예정이며, 관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관세협력도 항목(가점 항목)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 간담회·설명회·교육 참여실적, 경진대회 수상실적, 보세사 채용 수,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이력

관세법령정보포털>법령·판례 등>행정규칙>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통합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평가체계 마련

추진배경

법규준수도 평가제도의 통합을 통해 평가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 스스로 법규준수를 제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주요내용

- 2026년부터 관세행정 업무 분야별로 존재하는 여러 개의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법규준수도 제도'로 운영
- 기업이 자율적으로 법규준수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공개하고 관세협력도(가점) 항목을 추가

시행일

2026년 1월(2025년 4분기 법규준수도 평가분부터 적용)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조달청 구매총괄과

☎ 042-724-7265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정부가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2026) 경기도, 전라북도 → (2027) 지방정부 전면 자율화

- ▶ 그간 지방정부는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의 경우 의무적으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해야 했습니다.
- ▶ 이제 각 지방정부는 물품구매 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 이용, 자체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다양한 구매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다만, 자율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에 우선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소속 기초 지방정부 포함)에서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자율화 대상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명은 나라장터에서 확인 가능

지방정부의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추진배경

지방정부의 조달청 이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여 자율성·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가격·품질 경쟁 확대

주요내용

- 조달청이 단가계약한 물품이더라도 각 지방정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등 다른 방법으로 구매 가능
- 2026년에는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소속 기초 지방정부 포함)에서 전기전자제품(118개 품명)을 구매할 경우에 적용

시행일

2026년 1월

청년미래적금 신설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 ☎ 02-2100-1686/8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대폭 강화한 청년미래적금이 2026년 신설됩니다.

- ▶ 만기를 3년으로 설정하여 결혼·주거 등 자금 수요가 높은 청년의 장기가입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 ▶ 정부기여금 지원비율*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게 설정할 예정입니다.
*(일반형) 납입액의 6% / (우대형) 납입액의 12%
- ▶ 월 납입한도가 50만원인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상품으로, 최대 납입 시(원금 1,800만원) 만기에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미래적금 신설

추진배경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세대간 자산격차 완화

주요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소득자·소상공인
 - (일반형) ①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②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의 소득자(①&②동시충족)
 - (우대형) ①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 중기재직자* 또는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②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자(①&②동시충족)
- ※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의 경우 소득요건은 일반형과 동일하도록 완화
- 정부 지원율 6%(일반형) / 12%(우대형)
- 만기 3년, 월 납입한도 50만원

시행일

2026년 6월(잠정)

영문공시 확대 등 상장사 공시 개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 02-2100-2688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 등이 확대됩니다.

- ▶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이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됩니다.
- ▶ 공시 항목도 한국거래소 주요경영사항 공시 전부(55개 항목) 등 한국거래소 공시항목 전반으로 확대(기준: 주요경영사항 공시 일부(26개 항목))되며, 공시 기한도 자산 10조원 이상 등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당일(기준: 국문공시 후 3영업일)로 단축됩니다.

주주총회, 임원보수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됩니다.

- ▶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가 한국거래소 수시공시(주총 당일), 법정공시(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주총 결과 공시에 추가됩니다.
-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를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고, 임원 전체·개인별 보수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미실현 주식기준보상 현금환산액 병기)하여 임원보수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강화됩니다.

* 예) Restricted Stocks : 일정조건(가득조건) 달성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 → 주식이 지급되기전까지는 보수총액(보수지급금액)에 미포함됨

금융위 누리집>보도자료>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 방안

영문공시 확대 등 상장사 공시 개선

추진배경

자본시장 접근성과 주주권의 제고 위한 공시 개선 필요

주요내용

-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 공시 대상항목 확대 등(2단계 의무화)
- (주주총회, 임원보수·주식기준보상 공시)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 기업성과-임원보수간 관계 공시 추가 및 주식기준보상 공시 강화

시행일

- (영문공시): 2026년 5월 1일(단, 주주총회 결과의 영문공시는 3월 1일)
- (주주총회 공시): 2026년 3월 1일(3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주주총회부터 적용)
- (임원보수·주식기준보상 공시): 2026년 5월 1일(2026년 반기보고서부터 적용)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 02-2100-2511

2026년 1월 1일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 수수료가 인하됩니다.

- ▶ 금융권에서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부과하던 중도상환수수료를 실비용 내에서만 부과토록 개편*하는 방안이 '25년 1월부터 시행 되었으나,
* (내용) 중도상환수수료에 ①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②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 부과를 금지(「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14⑥9호) 개정)
- ▶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동 제도 개편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호금융권에 대해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하였습니다.

상호금융권 이용 금융소비자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상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조합별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 동일한 일정으로 도입 및 공시

- ▶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 동산·부동산 담보대출 : 1.1~2.0% → 0.6~0.9% ($\Delta 0.5\sim1.1\%$ p) 신용대출 : 0.9~1.7% → 0.1~0.5% ($\Delta 0.8\sim1.2\%$ p)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추진배경

금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동 제도 개편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호금융권에 대해서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방안을 적용

주요내용

- 상호금융권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에 ①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②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외에 다른 비용 부과를 금지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산정기준 개편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

☎ 02-397-7249

매년 업무량에 따라 변동되던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정액제로 개편하여 납부대상자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 주요 원자력이용시설(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은 운영 단계와 용량을 고려한 정액제로 변경하고, 표준설계인가, 방사선동위원소 허가·신고 등 기타 업무에 대한 부담금도 정액화하였습니다.
※ (현행) 투입되는 규제인력과 업무시간을 반영한 업무량x규제전문기관 평균 보수액 → (개편)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해체 단계별 정액제, 기타 업무별 정액제
- ▶ 원안위는 향후 3년 주기로 산정기준을 재검토하여 현행화할 예정입니다.

부담금 납부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와 징수유예 절차를 신설하고,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누리집>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산정기준 합리화

추진배경

부담금 부과·징수 조항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2025.1.21. 공포, 2026.1.1.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반영

주요내용

- 위탁업무량 기반의 부담금에서 시설별·업무별 정액부담금 산정체계로 변경
- 이의신청 근거 및 징수유예 절차를 마련하고, 부담금 납부시기·방법 등을 개선

시행일

2026년 1월 1일